

(검토보고서(일괄)-참조6)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 번호	
----------	--

2003. 11. 10

1. 제안사유

- 현재는 관례에 따라 실시하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을 실시함에 있어
- 우리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의 범위를 상임위원회 별로 세분화하여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행정국 기획예산과 업무중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 각 상임위원회별로 직무와 그 소관을 구분함

3. 검토의견

- 의회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는 것으로
- 현재는 관행적으로 행하여 오던 것을 명문화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하게 하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	--

2003. 11. 10

1. 제안사유

-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결산검사위원중 2인을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
(안 제3조 제1항)

3. 검토의견

-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보완 관계에 있는 두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굴러갈때에 좋은 화음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시장은 의회 의장에 추천하도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곧 앞에서 보고드린 협력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 부천, 안양, 광주시가 시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 우리시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을 현행대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안 검토보고

의안 번호	
----------	--

2003. 11. 10

1. 제안사유

- 회의록 원고의 복사, 열람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의장은 회의록 발간전에 의원의 회의록 원고의 복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안 제12조 제1항)

3. 검토의견

- 지금까지는 회의록 원고의 복사, 열람을 하고자 할 때 발언한 의원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 본 규정을 개정 의원 누구나 가능하게 한 것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검토보고

의안 번호	
----------	--

2003. 11. 10

1. 제안사유

-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 예산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 연구하는 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주제 및 관심분야에 관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안 제2조)
-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만이 아닌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안 제3조)
-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안 제5조)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안 제6조)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 성남시의회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규칙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 단체를 구성
-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풍토 조성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체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예산 만큼 의원님들이 쓸수 있는 예산이 적어지는 부정적인 요인 또한 있으므로 연구단체 등록에 있어서 무분별한 허용을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

의안 번호	
----------	--

2003. 11. 10

1. 제안사유

-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의장과 부의장으로 출마하려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음
(안 제3조 제1항)
-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5분 자유발언”이라 함)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자유발언 48시간 전까지 발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31조의2 제1항)
-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제2항)
-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함(안 제31조의2 제3항)
-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33조 제1항)
-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 함(안 제66조의2 제2항)

- 시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할 수 있고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10분을 연장 할 수 있음.(안 제66조의2 제3항)
-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함(안 제66조의2 제4항)
- 보충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질문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6조의2 제5항)

3. 검토의견

- 의회 내부의 회의진행과 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제1항 신설조항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으로 출마하려는 의원은 10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를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으며,
- 제66조의2(집행부에 대한 질문)제4항의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는 신설조항에 있어서는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회가 회의진행과 그 운영 및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의회내부의 자주법규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그 효력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따라서 우리시 의회만 본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